

부속서 I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분 야 원자력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54년 원자력 에너지법(42 U.S.C. §§ 2011 이하)

유보내용 투자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원자력의 "이용 또는 생산시설"을 주간 통상에서 이전 또는 수령하거나 제조·생산·이전·사용·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내의 인은 미합중국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허가는 외국인, 외국회사,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 지배 또는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간주되는 어떠한 실체에 대하여도 발급될 수 없다.(42 U.S.C. §2133(d)) 의료에서의 사용 또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원자력 "이용 및 생산시설"도 미합중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가의 발급은 외국인, 외국회사,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 지배 또는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간주되는 모든 실체에 대해서도 금지된다.(42 U.S.C. §2134(d))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82년 수출무역회사법(15 U.S.C. §§ 4011-4021)  
15 C.F.R. Part 325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1982년 수출무역회사법 제3편에 따라 상무부장은 수출행위에 대하여, "심사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그 법은 상무부장이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출행위가 그 법에서 금지하는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법무장이 동의하는 경우 심사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심사인증서는 인증된 수출행위를 영위함에 있어서 연방 및 주 독점규제법상의 책임을 제한한다.

그 법에서 정의된 "인"만이 심사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이라 함은 "미합중국의 거주자이거나, 미합중국의 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파트너십, 주 또는 지방정부 단체, 미합중국의 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회사,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한 그러한 인물 간의 협회 또는 결합체"를 말한다.

외국 국민이나 외국기업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회원"이 됨으로써 심사인증서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규정은 "회원"을 "신청자와 함께 인증서의 보호를 받으려는 (미합중국 또는 외국의) 실체"로 정의한다. 회원은 파트너십이나 합작투자의 동업자이거나, 회사의 주주이거나, 계약이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한 협회, 협동조합 또는 그 밖의 영리나 비영리 조직 또는 관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79년 수출관리법, 개정 포함(50 U.S.C. App. §§ 2401-2420)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 1701-1706)  
수출관리규정(15 C.F.R. Parts 730-774)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전제로, 수출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인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과 재수출 시에는 미합중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미합중국 인의 특정 활동은 그 소재를 불문하고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요한다. 허가 신청은 미합중국 내의 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미합중국 내의 외국 국민에게 통제대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그 외국 국민의 모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미합중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과 동일한 산업안보국의 서면허가가 필요하다.

분 야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20년 광물지대 임차법(30 U.S.C. §§ 181 및 185(a), 10 U.S.C. § 7435)

유보내용 투자

1920년 광물지대 임차법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회사는 육상 연방영토에 석유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석유 및 가스 정제제품의 수송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육상 연방영토상의 석탄 또는 석유와 같은 특정 광물에 대한 임차권 또는 그 밖의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도 육상 연방영토에 석유나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통행권을 취득한 국내회사 또는 육상 연방영토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국내회사를 100퍼센트 소유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외국투자자의 모국이 자국의 시민권자나 회사 또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자나 회사에게 허용하는 특권에 비교하여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나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광물 또는 접근권에 있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권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하여 적용된다.(30 U.S.C. §§ 181, 185(a))

국유화는 유사 또는 동종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외국의 법, 관습 또는 규정이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나 회사에게 공유지 임차에 관한 특권을 부인하는 경우, 그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그 시민권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는 해군석

유매장지에 대한 연방임차에 대한 접근권 취득이 제한된다.(10 U.S.C. § 7435)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22 U.S.C. §§ 2194, 2198(c)
유보내용	<u>투자</u>

특정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기업은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보험과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미합중국은 이 협정 발효일자로 해외민간투자공사가 22 U.S.C. §2194에 규정된 대로 투자 보험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다자투자보증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 유보항목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분 야** 항공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49 U.S.C. Subtitle VII, 항공 프로그램  
14 C.F.R. Part 297(외국화물운송주선업자); 14 C.F.R. Part  
380, Subpart E(외국(여객) 전세운항자 등록)

**유보내용** 투자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항공회사만이 국내선을 운항할 수 있으며(카보타지), 미합중국 국적 항공사로서 국제 정기 및 부정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합중국 시민권자는 간접 항공운송 활동(실제 항공기 운영자로서의 활동 이외의 항공 화물 운송주선 및 여객기 전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신청은 실질적인 상호주의에 위배되거나, 교통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부될 수 있다.

49 U.S.C. §40102(a)(15)에 따라 미합중국 시민권자라 함은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개인, 미합중국 시민권자로만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대표 및 이사회와 그 밖의 임원의 최소 2/3를 차지하고 있고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며 최소 75 퍼센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미합중국 시민권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미합중국 회사를 말한다.

**분 야**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49 U.S.C. Subtitle VII, 항공 프로그램  
49 U.S.C. § 41703  
14 C.F.R. Part 375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외국 민간항공기"로 미합중국 영역 내에서 특수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부는 특정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신청자의 국가가 미합중국 민간항공기 운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상호주의를 허용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외국 민간항공기"는 외국 등록 항공기 또는 미합중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소유·지배 또는 운영되는 미합중국 등록 항공기를 말한다.(14 C.F.R. §375.1) 49 U.S.C. §40102(a)(15)에 따라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라 함은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개인,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미합중국 시민권자가 대표 및 이사회와 그 밖의 임원의 최소 2/3를 차지하고 있고 미합중국 시민권자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며 최소 75퍼센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미합중국 시민권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미합중국 회사를 말한다.

\* 대한민국이 제12장의 특수항공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고 이 협정에 의한 실질적인 상호주의를 부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분 야** 운송서비스 - 관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 U.S.C. §1641(b)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다른 인을 위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미합중국 시민권자만이 그러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조합 또는 파트너십은 회사 또는 조합의 임원 최소 1인, 또는 파트너십의 구성원 최소 1인이 유효한 관세사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 관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1933년 증권법, 15 U.S.C. §§ 77c(b), 77f, 77g, 77h, 77j 및 77s(a)  
17 C.F.R. §§ 230.251 및 230.405  
1934년 증권거래법, 15 U.S.C. §§ 78l, 78m, 78o(d) 및 78w(a)  
17 C.F.R. § 240.12b-2

**유보내용** 투자

특정 캐나다 발행인을 제외한 외국기업은 주식 공모 등록을 하기 위하여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소기업 등록양식을 이용할 수 없으며, 증권의 등록 또는 연차보고서의 제출 시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기업 등록양식을 이용할 수 없다.

분 야	통신 - 무선통신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47 U.S.C. § 310 (a)-(b) 외국인참여에 관한 훈령 12 FCC Rcd 23891, paras. 97-118 (1997)
유보내용	<u>투자</u>

미합중국은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 따라 무선 허가의 소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하며,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는 특히 다음이 규정된다.

가. 어떠한 방송국 허가도 외국 정부나 그 대표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어떠한 방송·통신사업자·항공로 또는 항공고정국의 허가도 다음의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

- 1) 외국인 또는 그 대표
- 2) 외국 정부의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 3) 주식자본의 1/5을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 그리고

다. 방송 허가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방송국 허가는 주식자본의 1/4을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어떠한 회사에게도 부여될 수 없다.

\* 무선통신은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에 의한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특허변호사, 특허대리인 및 기타 특허상표청을 상대하는 업무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35 U.S.C. Chapter 3(미합중국 특허상표청을 상대하는 업무)  
37 C.F.R Parts 10 및 11(미합중국 특허상표청을 상대하여 다른 이를 대리)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다른 인을 위하여 미합중국 특허상표청을 상대하여 개업하고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특허변호사는 반드시 미합중국 시민권자이거나 미합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어야 한다.(37 C.F.R. § 11.6(a))

나. 특허대리인은 반드시 미합중국 시민권자이거나 미합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 또는 미합중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대리인에 대하여 자국에서의 개업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등록된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후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소재한 출원인을 대리하여 특허출원을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업할 수 있다.(37 C.F.R. § 11.6(c)) 그리고

다. 상표 및 비특허 업무 종사자는 미합중국 변호사 자격자이거나, 기득권을 갖는 대리인이거나, 미합중국 변호사 자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변호사 자격자, 또는 그러한 국가에서 등록된 대리인이어야 한다. 미합중국 변호사 자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변호사 자격자, 또는 그러한 국가에서 등록된 대리인은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를 대리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업이 허용된다.(37 C.F.R. § 10.14(a)-(c))

<b>분 야</b>	모든 분야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b>정부수준</b>	지역
<b>조 치</b>	미합중국의 모든 주정부, 콜롬비아 특별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조치
<b>유보내용</b>	<u>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u>  투명성의 목적상, 부록 I-가는 지역정부에서 유지되는 비합치조치의 비구속적 예시목록을 규정한다.

부록 I-가: 미합중국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1)

	지역의 조치가 기술된 분야	지역의 조치가 GATS에 따른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
사업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법률 서비스	X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X	
건축 서비스	X	
엔지니어링 서비스	X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X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X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X
연구개발 서비스		X
부동산 서비스	X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X
기타 사업서비스		
광고 서비스		X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		X
경영컨설팅 서비스		X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서비스		X
기술적 시험·분석 서비스		X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X
어업 부수 서비스		X
광업 부수 서비스		X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		X
인력 알선 및 공급 서비스	X	
조사 및 경비	X	
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X

1) 이 문서는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만 제공되며, 모든 것이 망라되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미합중국의 약속,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 따른 2005년 5월 미합중국의 수정 양허안, 그리고 관련 문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역의 조치가 기술된 분야	지역의 조치가 GATS에 따른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
장비의 유지·보수		x
빌딩청소 서비스		x
사진 서비스		x
포장 서비스		x
인쇄, 출판		x
컨벤션 서비스		x
기타		x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x
기타 배달 서비스		x
통신 서비스		x
시청각 서비스		x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x	
유통 서비스		x
교육 서비스	x	
환경 서비스		x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x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x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제외)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 커스 서비스 포함)		x
뉴스제공 서비스		x
도서관·기록 보관소·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x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x
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항공기의 유지·보수)		x
철도운송 서비스	x	

	지역의 조치가 기술된 분야	지역의 조치가 GATS에 따른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x
파이프라인 운송		x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화물 취급 서비스		x
저장 및 창고 서비스		x
화물운송주선 서비스		x



부록 I-가: 미합중국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2)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p>법률 서비스 (미합중국법 법무활동)</p>	<p><u>거주:</u> 아이오와, 캔자스,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또는 미네소타 내에 사무소 유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와이오밍</p> <p><u>주 내 사무소:</u> 콜롬비아 특별구, 인디애나, 미시건, 미네소타(또는 미네소타 내에 개인 거주 유지), 미시시피, 뉴저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p>
<p>법률 서비스(외국법 자문)</p>	<p><u>거주:</u> 미시건, 텍사스</p> <p><u>주 내 사무소:</u> 애리조나, 콜롬비아 특별구,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유타</p>
<p>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p>	<p><u>거주:</u>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콜롬비아 특별구,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p> <p><u>주 내 사무소:</u> 아칸소, 코네티컷,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미시건,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버몬트, 와이오밍</p> <p><u>시민권:</u> 노스캐롤라이나</p>
<p>건축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p>	<p><u>고위경영진 및 이사회:</u> 미시건</p>
<p>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p>	<p><u>거주:</u>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메인, 미시시피,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p>

2) 이 문서는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만 제공되며, 모든 것이 망라되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미합중국의 약속,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 따른 2005년 5월 미합중국의 수정 양허안, 그리고 관련 문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서비스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부동산 서비스	<u>거주</u> : 사우스다코타 <u>시민권</u> : 미시시피, 뉴욕
인력 알선 및 공급 서비스	<u>시민권</u> : 아칸소
조사 및 경비	<u>거주</u> : 메인, 미시건, 뉴욕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u>주 내 사무소</u> : 미시건
교육서비스(미용학교)	<u>면허 수 제한</u> : 켄터키
보건 및 관련 사회 서비스	<u>법인 형태</u> : 미시건, 뉴욕
철도운송 서비스	<u>법인 설립 요건</u> : 버몬트